

1. 개정이유

제명을 정비하고,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정비(산업통상부장관 소관 → 산업통상부 소관)

나.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“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산업통상부장관 소관</u> <u>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</u> <u>관한 규칙</u>	<u>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</u> <u>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</u>
제4조(설립허가) ① · ② (생략)	제4조(설립허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</u> <u>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</u> <u>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</u> <u>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</u> <u>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</u> <u>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</u> <u>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</u> <u>지 아니한다.</u>